

의안번호	2214137
의 퇴 인	황희의원
회 답 일	2025.9.8.
추계번호	25B3116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(산불진화단 등 구성·운영)	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67조의2(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인정에 대한 특례) 신설	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·질병·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										
1	안 제37조(산불진화단 등 구성·운영)	—	•미대상 —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하여 매년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<산불진화대원 교육·훈련 현황>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세부사업</th><th>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</th><th>2023</th><th>2024</th><th>2025</th></tr><tr><td>산불방지 대책 (2332-300)</td><td>산불교육 훈련 (진화대원 교육)</td><td>910</td><td>910</td><td>910</td></tr></table> 자료: 산림청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3	2024	2025	산불방지 대책 (2332-300)	산불교육 훈련 (진화대원 교육)	910	910	910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3	2024	2025									
산불방지 대책 (2332-300)	산불교육 훈련 (진화대원 교육)	910	910	910									
2	안 제67조의2(공상공무원 및 재해부상공무원 인정에 대한 특례) 신설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				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·질병·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국가유공자법”)」 제4조제1항제15호¹⁾에 따른 공상공무원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보훈보상자법”)」 제2조제1항제4호²⁾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보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 「국가유공자법」 및 「보훈보상자법」에 따라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, 생활조정수당, 간호수당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(참고자료 참조)
 - 개정안에 따라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,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지원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5.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2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4.재해부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- 다만, 현시점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·질병·장해를 입고 퇴직하여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공상공무원 보훈지원 현황

(자료: 국가보훈부)

구분	세부지원 내용
보훈 급여금 지급	■ 간호수당(1133-301, 일반회계) : 상이 2급 이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 해당자 ■ 생활조정수당(1133-302, 일반회계) : 생계곤란자에 한함 ※ 상이보상금은 해당되지 않음
교육 지원	■ 수업료 등 면제(2241-330, 세출, 일반회계) : 본인, 자녀(중·고·대학교) ■ 학습보조비 지급(2241-453, 세출, 일반회계) : 본인(중·고·대학교), 자녀(중·고등학교) ※ 2012.7.1.이후 등록한 7급 공상공무원의 자녀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% 이하인 경우에 지원 ※ 2012.7.1.이후 등록한 1~7급 공상공무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(입학, 재입학, 편입학)한 경우에 지원
취업 지원	■ 보훈특별고용 : 본인, 배우자,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※ 2012.7.1.이후 등록자 : 자녀 1인에 한하며,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(가점 취업은 제한 없음) ■ 가점취업, 직업훈련 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※ 2012.7.1.이후 등록자 : 부모 및 상이 7급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(2257-385, 일반회계)
의료 지원	■ 보훈병원(2150-365, 일반회계) 및 위탁병원 진료(2150-366, 세출, 일반회계) : 국비 ※ 2012.7.1.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 부담 ■ 보철구 지급(2150-371, 일반회계) ■ 본인 응급진료 :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* 14일결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 지원('18.7.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) ■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는 인정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 진료
대부 지원	■ 주택(구입,임차,개량), 아파트 분양, 사업, 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 - 대부한도액은 300~8,000만원까지(연 3.0~4.0%) (2259-387, 보훈기금)
주택 우선 공급	■ 신규건설·공급주택 우선공급 : 공급물량의 분양 5%, 임대 10% ■ 기존주택 매입·전세임대주택 : 2%(공급물량기준) (2259-390, 보훈기금)
기타 지원	■ 양로지원(2161-444, 보훈기금) : 무의탁자(남자 60세, 여자 55세 이상) ※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(남자 60세, 여자 55세 이상) ■ 양육지원(2161-444, 보훈기금) :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■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(2161-444, 보훈기금) : 생활수준 고려(본인부담금의 80% 지원) ※ 단, 상이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원(80%), 배우자는 생활수준 고려하여 60% 또는 40% 지원 ■ 수송시설 감면이용(2139-318, 일반회계)/협약콘도 감면이용(소노·한화·일성·청풍·주문진·리솜·통영스탠포드) ■ 고궁 등 무료이용(1급 상이자는 보조원 1명 포함) ■ 국립묘지 안장지원 (단,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공상자에 한함)(3250-351, 353~367,

	일반회계) ■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(국립묘지 안장자 제외)(3248-415, 일반회계) 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(유공자 본인 사망시, 지원요건 해당자)(3248-415, 일반회계) ■ 생업지원(공공시설내 매점·자판기 우선지원)
타법에 의한 지원	■ TV수신료 면제 ■ 전기요금 월16천원 한도할인(상이등급 1~3급) * 여름철(6.1~8.31) 월 20천원 한도할인 ■ 전화요금(이동전화 포함) 감면 ■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(거주지 지자체에 문의) ■ 의료급여증 발급 :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시('23.1.1. 신규신청자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,2종 수급권 구분) ■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(2158-380,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),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■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,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(보철용 경유자동차 1대) ■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(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) ■ 국내항공 요금 50% 할인(상이등급 1~4급은 동반보호자 1인 포함) ■ 주민등록·인감증명·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

[참고자료 2] 재해부상공무원 보훈지원 현황

(자료: 국가보훈부)

구분	세부지원 내용
보훈급여금 지급	■ 간호수당(본인)(1133-301, 일반회계) :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 해당자 ■ 생활조정수당(1133-302, 세출, 일반회계) :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생계곤란자에 한함 ※ 상이보상금은 해당되지 않음
교육지원	■ 수업료 등 면제(2241-330, 일반회계) : 부상공무원 본인, 사망공무원 배우자, 자녀(중·고·대학교) ■ 학습보조비 지급(2241-453, 일반회계) : 부상공무원 본인·사망공무원 배우자(중·고·대학교), 자녀(중·고등학교) ※ 7급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25% 이하인 경우에 지원 ※ 재해부상공무원·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(입학, 편입학, 재입학)한 경우에 지원
취업지원	■ 보훈특별고용 : 본인, 배우자(부모, 자녀는 제외) *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■ 가점취업, 직업훈련 : 본인, 배우자(2257-385, 일반회계)
의료지원	■ 보훈병원 진료(2150-365, 일반회계) : (본인) 국비, (배우자) 60% 감면 ※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 부담 ■ 위탁진료지정병원 진료(2150-366, 일반회계) : 본인(국비) ※ 7급상이자 상이처외 질환 10%본인부담 ■ 본인 응급진료 :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※ 14일경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한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('18.7.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) ■ 보철구 지급(2150-371, 일반회계) ■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: 보훈·위탁병원 진료비 선 납부 후 정산(단, 위탁병원은 '21.4.1.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) *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
대부지원	■ 대상 : 본인, 수권유족인 배우자 ■ 주택(구입, 임차, 개량), 아파트 분양, 사업, 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 - 대부한도액은 300~8,000만원까지(연 3.0~4.0%) (2259-387, 보훈기금)
주택 우선공급	■ 대상 : 본인, 수권유족인 배우자 ■ 신규건설·공급주택 우선 공급 - 분양 5%, 임대 10%(공급물량기준) (2259-390, 보훈기금)
기타지원	■ 수송시설(2139-318, 일반회계) : (본인) 지하철, 고속열차 감면이용 ■ 양로지원(2161-444, 보훈기금) : 무의탁자(남자 65세, 여자 60세 이상) * 재해부상공무원만 해당 ■ 양육지원(2161-444, 보훈기금) :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■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(2160-441, 보훈기금) : 지원요건 해당자

타법지원	■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,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(2158-380,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),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 공제, 지방세(자동차세, 취득세) 50% 감면(재해부상공무원 본인) ■ 의료급여증 발급 :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시('23.1.1. 신규신청자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,2종 수급권 구분) ■ 예비군훈련 보류(재해부상공무원 본인) :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제출 ■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(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)
------	--